

인구동태표본조사

1985

통계청 도서실



B003321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동태표본조사

198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레

I. 조사개요	3
1. 조사연혁	5
2. 조사목적	5
3.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6
4. 조사대상 기간	6
5. 조사지역	6
6. 조사시기	7
7. 조사방법	7
II.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9
1. 기본자료의 작성	11
가. 기본자료의 종류	11
나. 작성시기	11
다. 작성시 유의사항	12
라. 가구표 작성요령	13
마.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28
2. 기본자료의 수정 및 보완	39
가. 조사구요도	39
나. 가 구 표	43
다. 가구명부	49
라. 변동사항종합표	51

Ⅲ. 조사표 작성 및 면접요령	53
1. 조사표의 종류	55
2. 작성시기	55
3. 일반적인 주의사항	55
4. 면접 및 조사표 작성요령	57
가. 출생조사표	57
나. 사망조사표	62
다. 혼인조사표	70
라. 이혼조사표	74
Ⅳ.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77
1. 조사표류의 검토	79
가. 가 구 표	79
나. 변동보고서	80
다. 조 사 표	80
2. 조사표류 제출	81
가. 제출상의 유의점	81
나. 제출할 조사표류	81
다. 제출일자	82
부록 각종 조사표류 및 인구동태직업부호	83

I. 조 사 개 요

I. 조 사 개 요

1. 조사연혁

인구동태표본조사는 호적신고에 의한 인구동태통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 조사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1969년 이후 중단되었다.

그후 1972년부터 일반통계 111-21-03호로 승인함과 동시에 조사의 방법 및 표본을 대폭 개편하여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78년 및 1979년에는 인구동태표본조사구에서 중복조사를 실시, 제 반 인구동태율을 생산하였으며 중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1월부터 조사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조사목적

인구동태표본조사는 조사구내에서 발생하는 출생, 사망 및 인구 이동에 관한 인구동태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단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한 정태인구를 추정하며.

나. 국민의 생명표작성, 사망원인분석, 간접출산력 측정 및 가족계획실적의 평가자료등 보건위생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다. 기타경제, 사회, 후생, 교육 등 광범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가. 조사대상기간중 조사지역내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 및 인구
(전입 및 전출인구 포함)

나. 조사대상기간중 조사지역내에서 발생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4.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기간은 전월 21일부터 금월 20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일자의 기산에서 오는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동태사상은 전월 1일부터 조사일자까지 질의하여 파악하되 조사대상기간내의 동태사상만을 보고한다.

5. 조사지역

가. 1980년 인구센서스의 약 103,000조사구(시부-63,000, 군부-40,000) 중에서 562개 조사구(시부-466, 군부-96)를 추출하였다.

나. 그리고 이를 조사구별로 1980년 인구센서스 가구수로 평균 약 10가구가 되도록 여러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부에서는 2개의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하였으며 군부에서는 6개의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하여 조사구역으로 선정하였다.

다. 따라서 조사구별로 지정된 구역내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하여야 한다.(전국 약 16,600 가구)

라. 1984년 10월 조사부터는 매월 1/12씩 조사구를 연동교체하므로 전국적으로 매월 46개 조사구를 신규로 조사해야 한다.

6. 조사시기

매월 15일이 포함된 다음 1주일동안에 조사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같은시기에 조사하므로 별도지시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7. 조사방법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하는 면접식 타계조사방법에 의한다.

II.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Ⅱ.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1. 기본자료의 작성

가. 기본자료의 종류

- 1) 인구동태표본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자료에는 첫째 가구표와 가구명부가 있으며 둘째 변동보고서와 변동사항종합표가 있다.
- 2) 가구표 및 변동보고서는 표본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각 항목의 내용이 정확히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성시기

1) 가구표 및 가구명부

- 가) 표본이 교체되어 인구동태사항을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었을 때는 전 조사구역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나) 전입가구가 발생되었을 때는 매월 이를 파악하여 해당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한다.

2) 변동보고서

- 가) 매월 조사지역을 방문 기존 가구표상의 내용중 착오, 누락,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변동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작성한다.
- 나) 변동보고서에는 조사구의 경계 및 거처변동등 조사구 변동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변동보고서 및 변동된 가구의 가구표는 전월 21일부터 금월 20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금월 21~25일 사이에 작성한다.
- 4) 표본연동교체로 인하여 새로 시작하는 구역의 가구표 작성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작성시 유의사항

- 1) 모든 조사사항은 가구원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가구의 책임있는 응답자 즉 가구주나 각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2) 동거인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본인을 직접 면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3) 책임있는 응답자를 면담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표를 가구주에게 맡겨 기입토록 하고 다음날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4) 도사에서 면접을 거부할 경우 대문밖에서 대강의 문답으로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5) 면접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은 몇번이라도 재방문하여 조사원의 신분과 조사의 목적 및 조사결과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수차의 노력에도 안정된 상태에서의 면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반장 혹은 이장에게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대동 방문하거나 지도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이러한 사항은 조사내용의 정확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구표의 「㉑비고」란에 기입하여 둔다)

- 6) 가구표 및 변동보고서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기본자료로서 모든 항목은 표본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므로 모든 항목의 기입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 7) 생년월일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하고 출생계획 및 임신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에게만 묻는다.

라. 가구표작성요령

1)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각 지역별로 이미 부여되어 있는 담당조사구번호를 기입하며 지역별로는 아래와 같다.

- ① 서울시 001-230
- ② 부산시 250-337
- ③ 대구시 351-401
- ④ 인천시 403-434
- ⑤ 기타시 502-566 (경기, 강원)

603-635 (충북, 충남)

701-755 (전북, 전남)

803-869 (경북, 경남)

903-907 (제주)

⑥ 군 부 571-595 (경기, 강원)

671-692 (충북, 충남)

771-796 (전북, 전남)

871-899 (경북, 경남)

981-993 (경남, 제주)

기존의 조사구번호앞에 0을 추가하여 4자리로 기입하여야 하나 분할된 조사구는 별도로 첫자리의 숫자가 부여된다.

2) 구역번호

구역번호				
------	--	--	--	--

구역은 조사구를 다시 10가구씩 묶어서 분할한 하나의 지역을 말하며 시부에서는 2구역을 군부에서는 6구역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983년 10월분 조사부터 표본연동교체를 실시하여 구역번호의 칼럼수를 1개에서 2개로 변동하였다.

3) 거처번호

거처번호		
------	--	--

거처번호는 구역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에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그러나 조사구내의 새로 발견되는 신규거처는 구역에 관계 없이 지정순위에 따라 부여한다.

4) 가구번호

가구번호				
------	--	--	--	--

가구표의 가구번호는 그 거처내에 몇 가구가 생활하도록 구획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구가 몇번째 변동된 가구인가에 따라 기입한다. 기입요령은 처음 두 칼럼에는 그 거처내에 살고있는 가구수를 2단위로 기입하며 나머지 2칼럼은 처음 가구번호를 부여한 뒤 그 가구가 몇번 변동되었는가를 2단위로 기입한다.

※ 예) ① 3번거처에 3가구가 살 때 그 첫번째 가구는 처음과 똑같음(변동되지 않았음) → 0101

② 3번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두번째 가구는 3번 이사와 4번째 이사들어 온 가구임 → 0204

그리고 전입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번호 끝의 두 칼럼만 변동되도록 가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중간에 전출가구가 있더라도 이 전출가구의 가구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예외인 경우

첫째 ; 같은 거처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 거처에 세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가구가 전출했을 때 그 옆방에 살던 가구가 그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이동이유는 방
이 따뜻해서, 부엌이 조금 더 넓으니까 등)

들째 ; 같은 거처 내에서 다른 가구가 사용했던 곳까지 합해서
사용할 때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 거처에 세가구가 살다가 한가구가 전출했
을 때 그 전출가구가 살던 곳을 옆방에 살던 가구가
사용할 때는 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가구의 정의]

가구라 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생
계를 같이 하는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보통가구 - 일반가구

(2) 단독가구 -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즉 한 사람이 집을 모두 사용하거나
방을 빌려서 자취를 하는 경우

(3) 비혈연가구 - 혈연관계를 갖지 않은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가구 즉
다방, 미장원, 이발소, 음식점 등에서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종업원들이 함께 그곳에서 먹고 잘
경우

그리고 다음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남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은 단독가구가 될 수 없고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 * 부부나 가족이 함께 하숙을 하는 경우는 별개의 보통가구가 된다.
- * 고용주와 같이 살면서 숙식을 같이하는 가정부, 점원 기타 고용인 등은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 * 기숙사, 양로원, 요양원, 고아원 등은 조사편의상 가구의 형태개념에서 제외하여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의 일반가구(양로원, 요양원, 고아원 등의 관리인 가구, 기숙사 사감의 가구 등)는 조사한다.
- * 외국인 가구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별도의 한 가구로 한다.
- * 외국인은 조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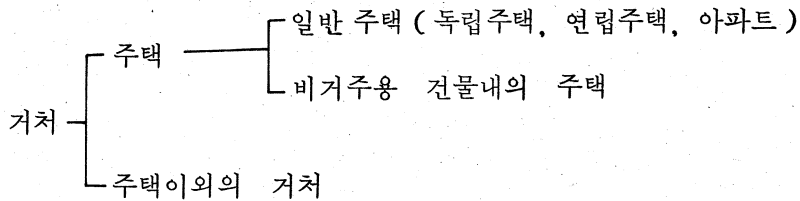
5) 주 소

그 가구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번지·호수는 물론 통·반까지 자세히 기입한다.

6) 거처구분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따라서 ⑥란을 기입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먼저 응답자가 살고있는 장소가 주택에 속하는지 주택이외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에 만일 그 거처가 주택에 속한다면 그 주택의 종류를 가려야 할 것이다.

주택의 판별과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정의]

보통 독채로 된 살림집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완전히 구획된 건물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한다.

주택의 구비요건은

첫째 ; 영구건물

둘째 ; 한개 이상의 방 및 부엌

셋째 ; 독립된 출입구

넷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일단위

[주택의 종류]

독채 살림집,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독립주택 : 원칙적으로 한 가구만 살도록 건축 또는 개축된 건물을 말한다.
- (2) 연립주택 : 두가구 이상이 살도록 연립하여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 (3) 아파트 : 한 건물내에 다수의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분획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 (4)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여관, 식당, 상점, 사무실, 공장 등과 같이 살림집으로 건축되지 않은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를 말한다.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처

예 : 가. 호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

나.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교아원, 보육원 등 특수사회시설

다. 사찰(암자 제외)

르. 토목공사 현장

미. 기타 천막, 토굴 등

7) 소유관계

1. 자 가 : 가구주 소유의 집
2. 전 세 : 집주인에게 정해진 돈을 이자없이 맡기고 들었다가 나갈 때 다시 찾게되는 셋집 (셋방)
3. 보증부월세 : 보증금을 내고 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 (셋방)
4. 삭 월 세 :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셋집 (셋방)
5. 월 세 : 보증금없이 정해진 월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 (셋방)
6. 기 타 : 무상 (세없이 빌려든 집이나 방), 관리비만 내는 관사 또는 사택 등이 포함되며 그 내용에 따라 우측여백에 무상, 관사, 사택이라 기입한다.

8) 구역구분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내의 가구에 대하여 “ 1 ”에 ○표시하고, 기타 구역에는 “ 2 ”에 ○표시한다.

9) 가구구분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내의 가구에 대하여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고, 기타 구역은 공란으로 남겨둔다.

10) 번 호

가구원번호로 가구원수가 8인 이상일 때에는 가구표를 2매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장의 번호는 08,09,10 등으로 수정하고 ⑤란부터 ⑨란까지는 기입하지 않는다. 이때 란외의 (매중

매)란을 기입하여야 한다. 가구원수가 7인 이하일 경우에는 (매중 매)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가구원이 전출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구원번호를 다시 수정해서는 안되며 일단 사용했던 가구원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도 안된다. 전출한 가구원이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종전의 가구원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맨 마지막 번호를 준다.

11) 이 름

가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기입하되 가급적이면 가주, 배우자, 미혼자녀, 미혼형제 및 자매, 기혼자녀, 가주의 기혼 형제 및 자매, 부모, 친척, 동거인 순서로 기입한다.

[가주의 정의]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원 중에서 사실상의 생계책임자로서 소득이 많은 자를 말한다.

[가구원의 정의]

가구원이란 가주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 (혈연관계가 있든 없든)으로 상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하는 사람의 정의]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 당시 조사구역에 생활의 본거 의사를 갖고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된다.

- (1)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상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 (2) 조사구내에 살고 있으면서 조사당시 일시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즉 친족방문, 출장, 사업상 여행중인 사람

- (3) 가족은 다른 구(조사구 밖)에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날자를 그 조사구내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 즉 방학동안에만 자기 집에 가 있고 학교는 그 조사구내에서 다니면서 가끔 자기집에 들러러 가곤하는 사람, 가정부 등
- (4) 일정한 주거가 없으면서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발견된 사람 즉 일정한 거처가 없는 노동자, 걸인 등과 그들의 가족
- (5) 영외에 거주하는 현역군인(출·퇴근하는 군인)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장기간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중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은 상주개념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간주한다.
- * 외국인,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교도소수감자는 가구원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부모님도 뵈올겸하여 당분간 와있는 사람중(본인들은 곧 간다고 할 경우) 다음달에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이 문을 닫아 당분간 와있는 사람중 그 다음달에도 그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아들들이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이번에는 이 조사구내의 아들차례여서 부모님이 오셨을 경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학교에 다니거나 농사를 짓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사람중
(부모들은 곧 올거라고 얘기함) 다음 달에도 오지 않았
으면 전출로 처리한다.

1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알기 쉬운 말로 간단히 기입한다. 즉 가구주, 처, 차남,
차녀, 장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남, 부, 모, 고모의 장녀, 가정부
(식모), 하숙인, 점원, 고용인, 동거인 등.

13) 성 별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로 기입한다.

14) 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순서를 밝
는다.

1. 생일이 언제입니까?
2.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3. 몇 살입니까? 띠는 무엇입니까?

로 질문한 후 음력의 경우는 양음력 환산표를 보고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하고 나이와 띠가 다르게 응답했을 경우에는 “띠”

를 중심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15) 학 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재학, 중퇴, 졸업을 나타내도록 “국2년 재”, “국졸”, “중3년 재”, “중졸”, “고1년 재”, “고졸”, “대2년 재”, “대졸”로 기입하되 연령미달로 미취학의 경우에는 “미취”, 기타 연령이 지났으나 학교를 안다니던 경우에는 “무학”으로 기입한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중퇴의 경우나 재학의 경우 몇년 중퇴 및 재학인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즉 중학교를 2년 다니다 중퇴하였으면 “중2년중퇴”,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 “중3년재”로 기입한다.

16) 배우관계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기입하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여야 한다.

* 사실혼의 경우도 유배우로 한다.

* 한 사람이 한명 이상의 처를 거느리고 있을 때에도 모두 유배우로 한다.

* 사별이란 결혼은 하였으나 배우자의 한편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록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별로 취급한다.

⊙ 사실혼 : 사실혼이란 가정을 구성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어야 하며 동거 등으로 객관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 * 법적으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별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혼으로 간주한다.
- * 미혼은 한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 두번 이상 결혼한 경우 최종상태를 배우관계로 한다.
즉 초혼에 실패(이혼, 사별)하고 재혼하였으나 사별(이혼)하여 현재 홀로 있으면 사별(이혼)에 해당된다.

17) 초혼년월

모든 기혼남자 및 여자에 대하여 첫 결혼년도 및 월을 조사 기입한다. 초혼년도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초혼 당시의 연령을 물어 다음 방식으로 계산하고 음력월은 양력으로 환산하도록 한다. 사실혼의 경우 동거시작 년월을 기입한다.

[예] 출생년월일 1941년 6월 18일

초혼 연령 23세 음 11월 30일(세는 나이)

1941

+ 22

1963 초혼년월 : 1964년 1월 14일

이 경우 양·음력환산표 1963년을 보고 음력 11월 30일을 찾으면 다음 해로 넘어감을 알 수 있다.

[예 2] 출생년월일 1924년 11월 23일

초혼 연령 19세 음 3월 15일(세는 나이)

1924

+ 18

1942. 4.29 - 초혼년월일

양·음력환산표 1942년에서 음력 3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42년 4월 29일이 된다.

[예 3] 출생년월일 1942년 1월 19일

초혼 연령 29세 양력 12월 25일 (세는 나이)

가) 1942

+ 28

1970.12.25

나) 1942

+ 27

1969.12.25

출생년월일이 양력이나 음력 출생년월일이 음력으로 1941년 모두 1942년에 해당될 경우 에 해당되고 양력으로는 1942년일 경우

※ 초혼년월 계산은 초혼일자가 생일을 지났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고 다만 초혼일자가 생일이 음력일 경우 양력으로 환산해서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만 2를 빼준다.

(환산해도 똑같은 연도일 때는 1만 빼준다)

18) 출산계획

기혼부인에게 묻는다.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지실 생각이십니까? (더 낳겠다는 경우) 남자아이는 몇명이나 더 낳으시겠습니까? 여자아이는 몇명이나 더 낳으시겠습니까? 와 같이 묻는다.

⑱란은 실제 출산계획을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더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다”(신체적 결함 및 기타 이유로)는 경우는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애매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낳는데까지(생기는대로) 낳겠다”던가 “모르겠다”는 경우는 만일 부인께서 출산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다면 몇 명의 자녀를 더 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 결과에는 다음과 같이 ○으로 확실한 출산계획이 없음을 표시한다. 설득하여도 애매한 응답만을 할 경우에는 응답거부로 기입한다.

19) 임신여부

기혼부인중 임신가능연령(15~49세)에 해당하는 부인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 임신부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출산예정년월을 조사하여 기입한다. 또한 그 임신이 끝났을 경우에도 변동보고서 7 임신결과란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신결과는 정상출산(출생) 및 중절, 사산 등 모든 경우 다 보고하여야 한다.

20) 전입일자

가구 또는 가구원이 실제로 전입한 일자를 기입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전입누락을 2개월 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발견된 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전입한 일자이다.

21) 비 고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원에 대한 특기사항 및 기록 수정이 필요할 경우 등을 함께 기입하며 주로 전출년월일과 목적지를 기입한다.

22) 가계조사 부적격 사유

가계조사구역내의 부적격가구에만 부적격 사유를 기입한다.

23) 비고(거처 및 가구특징 등)

조사에 참고가 될 사항은 무엇이나 기입한다. 특히 가구의 특징과 동태조사에 대한 응답태도는 반드시 기입한다.

가구의 특징으로는 예를들면

- * 구멍가게의 경영 생활
- * 극빈가구 : 가구주 반신불수
- * 상류 생활가구 주택건평 50평
- * 4번 가구원 (○○○) 임신불능
- * 대포집
- * ○ ○공장 안집으로 4명의 기능공이 동거
- * 조사에 매우 협조적임
- * 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응답에 성실성이 없음

등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하도록 한다.

마.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1) 난외사항(①란부터 ④란)

① 조사구번호

지역별로 이미 부여되어 있는 담당조사구 번호를 4단위로 기입한다.

(2) 가구표정리

조사담당

조사원이 제 조사표류(가구표, 조사표, 변동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입내용을 확인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지도구책임자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고 지도구책임자가 확인 날인한다.

담 당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③ 현 황

전월가구

전월변동보고서 제출당시 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변동보고서 ③란의 금월가구수가 전월의 가구수가 있다.

증가가구(상단)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⑤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증가가구(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신규로 조사하는 구역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감소가구(상단)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⑭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감소가구(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조사를 중단하는 구역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금월가구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금월가구수=전월가구+증가-감소

전월인구

전월변동보고서 제출당시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변동 보고서 ③란의 인구수가 전월의 인구수가 된다.

증가인구 (상단)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인구수를 기입한다.

증가인구=⑥ + ㉓

증가인구 (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신규로 조사하는 구역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감소인구 (상단)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인구수를 기입한다.

감소 = ⑮ + ㉔

감소인구 (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조사를 중단하는 구역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금월인구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금월인구수 = 전월인구 + 증가 - 감소

금월인구수는 변동사항종합표상의 인구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출생, 사망건수

③현황과는 별도로 출생과 사망건수(누락건 포함)를 기입한다.

(하단에는 신규로 조사하는 구역의 출생, 사망건수를 기입하도록한다) 단, 출생과 사망의 누락분에 대해서는 특기사항란에

「○○월 출생누락 ○ 전」 등과 같이 기입하여 준다.

2) 란내사항 (⑤란부터 ⑥⑩란)

Ⅰ 가구증가

- ① 전입가구, 전입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⑦란부터 ⑨란까지 가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고 ⑤란은 증가된 총가구수 ⑥란에는 이들 가구의 총가구원수(⑨란의 합계)를 기입한다. 가구전입의 경우 ⑪란에는 ○○도 ○○시·군을 기입하며 ⑫란 이동사유는 상세히 기입한다. ⑬구분란에는 전입, 전입누락, 착오를 변동이유로 기입한다. 단, 가구전입의 경우 각 가구원의 이전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특기사항란에 일일이 기입한다.
- ② 조사구내에서 한 가구가 2가구로 되었을 때에는 분가된 가구수를 하단 「분가 가구수」란에 기입하고 ⑥란 총 증가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Ⅱ 감소가구

- ① 전출가구, 전출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⑯⑰⑱란에 가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고 ⑭란은 감소된 총 가구수 ⑮란에는 이들 가구의 총가구원수(⑱란의 합계)를 기입한다. ⑳구분란에는 전출, 전출누락, 사망(1인가구일 경우) 착오를 변동이유로 기입한다. 가구전출의 경우 ⑳란에는 ○○도 ○○시·군을 기입한다. ㉑란 이동사유는 상세히 기입한다. 가구전체가 전출하였으나 그 목적지가 가구원별로 다를 경우 「○번가구원은 ○○도 ○○시·군으로」 「○번 ……, 가구원은 ○○도 ○○시·군」

으로 특기사항란에 기입한다.

- ② 조사구내의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하단에 「통합된 가구수」를 기입하고 ⑭란에 감소된 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③ 가구원 증가

- ① 가구원의 전입, 전입누락, 착오, 출생 등은 가구원의 증가요인이 된다. 이 때에는 가구표의 정리를 위해 ⑳란부터 ㉓란까지 가구표 작성요령으로 기입한다.
- ② ㉔전거주지란부터 ㉖구분란까지는 ① 가구증가란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 ③ ㉗란은 하단에 기입된 가구원수를 모두 합해서 기입한다.

④ 가구원 감소

가구원의 전출, 전출누락, 착오, 사망 등은 가구원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이 때에는 「④ 가구원 감소」의 각란에 가구 감소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⑤ 가구표 수정요구사항

가구표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④⑦ 및 ④⑧란에 기입하고 ④⑨란은 수정하여야 할 항목번호를 기입하고 ④⑩수정내용에는 수정할 내용을 기입한다.

단, 부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전과 변동후의 내용만을 기재하고 부호는 기입하지 않는다. (예 3, 4)

기입 예 :

예
1) 01-05-01-02 가구 2 번가구원 임희순의 생년월일 1937.2.15 →1927.2.15
2) 12-06-02-01 번가구 6 번가구원 김철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4 남 → 집원으로
3) 11-06-03-02 번가구 3 번가구원 김영석의 학력란이 중졸→고 1 재로
4) 02-20-02-01 번가구 가구주의 이름이 김병석 → 김영식으로

㉔가구번호	㉘가구	㉙가구	㉚수정내용	
	원번호	표란 번호	수정전 내용	수정후 내용
01-05-01-02	02	14	1937. 2.15	1927. 2.15
* 각 란의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12-06-02-01	06	12	4 남	집 원
* 각 란은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11-06-03-02	03	15	중 졸	고 1 재
* 각 란은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02-20-02-01	01	11	김병석	김영석
* 각 란은 부호기입을 해서는 안됨.				

㉔ 동일 조사구내 이동

(가) 분 가

- ① 어떤 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동일 조사구내에서 한 가구를 형성하여 분가했을 때에는 「㉔구분」란에 분가라고 기입하고 ㉔㉕란은 이동하기 전의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기입하고 ㉔㉖란은 이동후의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㉔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㉔이동후 거처의 종류」 「㉔이동후 주택소유관계」란은 이동한 후의 상태를 기입하고, 「㉔이동후 배우관계」 「㉔초혼년월」란은 이동후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기입토록 한다. (물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상태를 기입한다.)
- ② 동일 조사구내에서 가구가 분가하여 한 가구를 형성하여 한 가구가 증가했을 때에는 그 분가한 가구를 「㉔ 가구 증가」의 하단의 「조사구 내의 분가가구」란에 기입하고 ㉔란 총증가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 ③ 분가가구는 새로운 가구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 합

- ① 동일 조사구내에서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하였을 때에는 「㉔ 조사구내 이동」란에서 「㉔구분」란에 통합이라 기입하고 「㉔ 이동전 가구번호」, 「㉔ 이동전 가구원번호」, 「㉔ 이동후 가구번호」, 「㉔ 이동후 가구원번호」, 「㉔ 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㉔ 이동후의 거처의 종류」, 「㉔ 이동후의 소유관계」 「㉔ 이동후 배우관계」, 「㉔ 초혼년월」을 분가의 경우와 같

이 기입한다.

- ② 동일 조사구내에서 2가구가 한가구로 통합되어 한 가구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통합된 가구수를 「㉒ 가구감소」 하단의 「조사구내의 통합가구」란에 기입하고 「㉔」란 총가구 감소수에 합산하여 준다.
- ③ 통합가구에 대하여서는 가구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대) 이 동

- ① 동일 조사의 조사구역 내에서 이동가구가 있을 때에도 「㉒ 조사구내 이동」란에 기입한다. 「㉒ 구분」란에는 “가구이동”이라 기입하고 「㉔ 이동전 가구번호」, 「㉕ 이동후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㉕ 이동전 가구원번호」, 「㉖ 이동후 가구원번호」, 「㉗ 이동후 거처의 종류」, 「㉘ 이동후 소유관계」, 「㉙ 이동후 배우관계」는 사선「/」을 친다. 그리고 이동후의 거처의 종류와 이동후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보고서 ㉕ 수정요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 ② 동일 조사구내 가구이동은 가구증감에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입하는 곳이 없으며 가구표도 작성하지 않으나 가구표상의 가구번호를 두줄로 긋고 이동후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③ 동일 조사구내에서 가구원이 다른 가구의 가구원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㉒ 구분」란에는 “가구원 이동”이라 기입하고 「㉔ 이동전 가구번호」, 「㉕ 이동전 가구원번호」, 「㉖ 이동후 가구번호」, 「㉗ 이동후 가구원번호」, 「㉘ 이동후 가

주주의의 관계」, 「㉞이동후 거처의 종류」, 「㉟이동후 주
택소유관계」, 「㊱이동후 배우관계」, 「㊲초혼년월」은 분가
의 경우와 같이 기입한다.

「예」 [6] 조사구내 이등 (가구이등, 가구원이등, 분가,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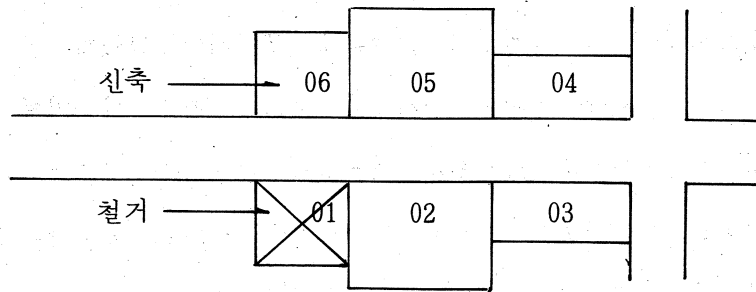
①가구이등 ②가구원이등 ③분통 ④합	이 가 번	⑤2 등 전 구 호	⑤3 이 등 전 가 구 원 번 호	이 가 번	⑤4 등 구 호	⑤5 이 등 후 가 구 원 번 호	⑤6 이 등 후 가 구 주 와 가 구 원 의 관 계	⑤7 이 등 후 의 거 치 종 류	⑤8 이 등 후 주 택 소 유 계	⑤9 이 등 후 우 계	⑥0 이 등 후 혼 년
가 구 이 등	01-02-01-01			01-06-02-01							
분 가	11-04-01-01	03	03	11-02-02-02	01	01	가 구 주	독립주택	전 세	유배우	79.4
분 가	11-04-01-01	07	07	11-02-02-02	02	02	처	독립주택	전 세	유배우	79.4
통 합	01-09-01-02	01	01	01-02-01-01	05	05	장 남	독립주택	자 가	유배우	80.3
통 합	01-01-01-02	02	02	01-02-01-01	06	06	장남의처	독립주택	자 가	유배우	80.3
가 구 원 이 등	11-10-03-02	08	08	11-05-01-01	06	06	장 남	독립주택	자 가	미 혼	
분 가	11-20-01-01	04	04	11-12-04-02	01	01	가 구 주	독립주택	전 세	유배우	78.4

㉓ 임신기록 및 결과

- (1) 기혼부인중 가임여성(15~49세)에 대하여 임신여부를 물어 임신 중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㉑ 가구번호 ㉒ 가구원번호 ㉓ 부인이름 ㉔ 출산예정년월을 기입하고 ㉕ 결과란은 사선을 친다. 그러나 임신했던 부인의 임신이 끝났을 때는(정상출산, 중절, 사산, 기타의 모든 경우 다 해당됨) ㉑ 가구번호 ㉒ 가구원번호 ㉓ 부인이름 ㉕ 결과란을 기입하고 ㉔ 출산예정년월은 사선을 친다. ㉖ 비고란에는 중절이나 사산된(몇 개월만에 중절, 사산되었나?) 개월수 및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상상임신, 특수한 병으로 인한 것을 임신으로 오판등)를 기입토록 한다. 특히 사산에 대해서는 출생즉시 사망했는가의 여부를 응답자에게 재확인하여 영아사망과 사산을 정확히 구분토록 하여야 한다.
- (2) 전입과 출생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인 것은 임신기록란에 기입하지 않는다.

㉔ 특기사항 및 신축(누락)거처의 위치

신축(누락) 건물(거처)의 위치를 조사구요도의 보완내용대로 그려넣고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지형지물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조사구요도의 보완내용을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으로 그려넣는다. 단, 중요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요도를 새로 그려 첨부한다.



그 외 ㉠ - ㉦항까지 기입할 수 없었던 사항은 무엇이나 이란을 이용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예 :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02-03번 거처는 6월중으로 철거 예정임.

2. 기본자료의 수정 및 보완

가. 조사구역도

조사구는 조사원이 지역내의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 인구동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조사구역도는 이 조사구의 경계선 및 각종 지형지물(즉 산, 능선, 하천, 교량, 논, 밭, 도로, 제방, 전주, 각종 건축물 등)의 분포상태가 표시된 청사진을 말한다. 이 조사구역도는 측량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배부받은 조사구역도를 다음과 같은 순서와 요령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 경계선의 확인

조사구역도에는 그 경계선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조사구역도와 가구표를 가지고 경계선을 따라 실지로 답사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누가 보아도 쉽게 경계선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계선상의 중요 지형지물을 요도의 경계선상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만일 실지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지도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각종 지형지물의 확인

경계선 확인이 끝나면 경계선내의 각종 지형지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위치에 사실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누락된 것이 없는가 또는 착오된 것이 없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기입 및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거처에는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는데 누락된 거처를 추가 기입할 때에는 해당 구역의 마지막 거처번호가 되도록 거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거처라 함은 각종 건물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거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거주목적으로 건축된 일반 독립주택
- (2) 여러 가구가 각각 별도로 살 수 있도록 건물이 완전히 구획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각 단위
- (3) 거주목적이 아닌 별개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용 건물(그안

에 사람이 살든 안살든)

(4) 건물로는 볼 수 없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판자집, 천막, 움막 등

3) 수정, 보완요령

조사구 순회 및 가구 방문시마다 거처의 신축 및 철거, 도로의 확장 등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구 요도를 수정보완한다.

(1) 신축(누락)거처의 경우

담당조사구 경제선내의 지역에서 신축거처(30 가구분 이상의 아파트 제외) 및 누락거처가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 발견된 순서에 따라 조사구번호가 홀수일 때는 1번구역부터, 조사구번호가 짝수일 때는 맨 마지막 구역부터 구역번호 차례로 편입시켜 해당 구역의 마지막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조사구요도 상에는 해당 위치에 그 거처를 그려넣고 인구동태 조사구역에 해당되는 거처의 가구만을 대상가구로 하여 조사를 한다.

[예] 1. 조사구번호가 0103이고 구역수가 8개인 조사구의 인구동태조사 해당구역이 03번과 04번 구역일때 7개의 신축거처가 발견되었다면

(발견순서) (편입구역번호)

1번째 거처	01 구역	┌───┐ └───┘	조사구요도에만 보완
2 " "	02 구역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3 " "	03 구역	┌───┐ └───┘	조사구요도상에 보완
4 " "	04 구역		(조사대상 거처)

(발견순서) (편입구역번호)

5 번째	거처	05 구역	}	→	조사구역요도에만 보완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6 "	"	06 "			
7 "	"	07 "			

이때 전월의 03 번구역의 거처수가 5 개였고 04 번구역의 거처수가 4 개였다면 3 번째 발견된 거처는 요도상에서는 0306 번 거처가 되고 4 번째 발견된 거처는 0405 번 거처가 된다.

2. 조사구번호가 0104 이고 구역수가 8 개인 조사구의 인
구동태조사 해당구역이 05 번과 06 번구역일 때 7 개의
신축거처가 발견되었다면

(발견순서) (편입구역번호)

1 번째	거처	08 구역	}	→	조사구역요도상에만 보완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2 "	"	07 "			
3 "	"	06 "	}	→	조사구역요도상에 보완 (조사대상거처)
4 "	"	05 "			
5 "	"	04 "	}	→	조사구역요도에만 보완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6 "	"	03 "			
7 "	"	02 "			

이때 전월의 06 번구역의 거처수가 5 개였고 05 번구역의 거처수가 4 개였다면 세 번째 발견된 거처는 요도상에서는 0606 번 거처, 네 번째 발견된 거처는 요도상에서 0505 번 거처가 된다.

(2) 철거 (착오) 거처의 경우

요도상의 해당 거처번호 위에 「×」표를 한다.

(3) 기타 지형지물의 변동시

조사구요도상에 변동된 내용대로 수정 보완한다.

(4) 주의사항

조사구요도의 경계선과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내용을 보완할 때에는 반드시 적색 볼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거처에 이미 부여한 번호는 어떤 거처가 철거되어 결번이 생기더라도 변경해서는 안된다. 즉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 및 앞으로 신축이나 누락의 경우에 새로 부여하는 거처번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조사원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나. 가구표

매월 변동보고서 및 인구동태 표본조사결과에 따라 가구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보완한다.

가구명부도 가구표에 준해서 함께 수정보완해야 한다.

1) 기존거처내의 가구변동

조사구요도에 이미 번호가 기입된 기존거처내에 가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전입가구가 있을 때

(가)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후에 전입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삽입

하여 철하고 2부는 보고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 전출가구가 있을 때

(가) ⑩란의 각 가구원번호에 사선을 긋는다.

(나) ⑳란 비고란에 전출년월일과 목적지를 기입한다.

(각 가구원별로 목적지가 다른 경우 ㉑란에 같은 양식으로 기입한다)

(다) 가구표는 가구번호순으로 철한다.

(3) 누락가구가 있을 때

(가)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부터 있던 가구가 전입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변동보고서 ① 가구증가의 ⑦란부터 ⑬란까지 기입하고 ⑬구분란에는 전입누락가구임을 기입한다.

(나) 모든 업무처리는 전입가구에 준하고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삽입하여 철하고 2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다)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부터 없던 가구가 전출누락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동보고서 ② 가구감소의 ⑩란부터 ⑲란까지 기입하고 ⑲구분란에는 전출누락가구임을 기입한다.

(라) 모든 업무처리는 전출가구에 준하고 가구표는 가구번호순으로 철해 둔다.

(4) 착오가구가 있을 때

(가) 착오로 인하여 없는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했을 때는 ⑩란의 각 가구원번호를 사선을 긋고 ㉓비고란에 착오가구 및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 (나) 변동보고서 ②가구감소의 ①⑥란부터 ②②란까지 기입하고 ②②구분란에는 착오가구임을 기입하고 모든 업무처리는 전출가구에 준한다.
- (다) 착오로 인하여 원래부터 있던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철하고 2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 (라) 변동보고서 ①①가구증가의 ⑦⑦란부터 ①③란까지 기입하고 ①③구분란에는 착오가구임을 기입하고 모든 업무처리는 전입가구에 준한다.
- (5) 동일 조사지역내에서 이동한 가구가 있을 때
기존가구번호에 두줄을 긋고 새가구번호를 기입한 다음 ②③비고란에 「동일조사구내 이동: 〇〇〇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〇-〇〇-〇〇로」라 기입하고 순서를 바꾸어 다시 철한다. 이때 물론 바뀐 주소「⑥거처구분」 및 「⑦소유관계」 등은 정정 기입하여야 한다.
- (6) 어떤 가구에서 분가된 가구가 있을 때
- (가) 어떤 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한가구를 형성하여 분가를 했을 때에는 분가되어 나간 가구원은 ②①란에 「〇〇〇〇-〇〇-〇〇번 가구로」라고 기입한다.
- (나) 분가되어 나간 가구는 전입후의 거처에서는 전입가구와 같은 순서로 처리하고 ②③비고란에 「〇〇〇〇-〇〇-〇〇 가구에서 분가」라 기입한다.

(7) 조사구내의 2개 가구가 통합되어 1개 가구로 되었을 때

(가) 통합을 위하여 전출된 가구의 거처에서는 전출가구처럼 처리하고 ㉓란에 「○○○○-○○-○○번 가구로 통합전출」이라 기입한다.

(나) 가구가 통합된 거처의 가구에서는 전입가구원처럼 처리하고 ㉔비고란에 「○○○○-○○-○○번 가구에서 통합전입」이라 한다.

(8) 표본연동교체로 인하여 매월 조사구역이 1/12씩 바뀌므로 동일 조사지역내 이동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금월에 조사했던 구역(다음달에는 조사하지 않는 구역)에서 다음달에 조사하는 구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전입가구와 같이 처리한다.

(나) 금월에 조사했던 구역(다음달에도 계속 조사하는 구역)에서 다음달에 조사하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전출가구와 같이 처리한다.

(다) 금월에 조사했던 구역(다음달에도 계속 조사하는 구역)에서 다음달에 새로 시작하는 구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동일 조사구역내 이동으로 처리한다.

*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조사구역내 이동으로 처리한다.

3) 기존가구내의 가구원 변동시

이미 가구표가 작성되었던 가구내에 가구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이때 가구원의 변동사항 확인방법은 각 가구를 방문했을 때 우선 가구원수 및 가

구원이름을 물어 가구표와 대조 확인한다.

(1) 전입가구원이 있을 때

(가) ⑩란에 마지막 가구원번호가 되도록 한다.

(나) ⑪란부터 ⑳란까지 가구표 각란 기입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다) ㉑란 기입 예

사 례

기입방법

 시 구
전입 : ○○도 ○○시 에서 전입 (84.1.20)
 군

(2) 전출가구원이 있을 때

(가) ⑩란의 전출가구원의 번호위에 사선을 긋는다.

(나) ㉑란 기입 예

사 례

기입방법

 시 구
전출 : ○○도 ○○시~~으로~~ 전출 (84.5.20)
 군

(3) 누락가구원이 있을 때

(가) 전입누락 가구원의 경우 전입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전입누락보완」이라 기입한다.

(나) 전출누락 가구원의 경우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전출누락보완」이라 기입한다.

(4) 착오가구원이 있을 때

(가) 착오로 인하여 그 가구의 가구원이 될 수 없는데도 가구표에 기입되었을 때에는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 (나) 착오로 인하여 원래부터 그 가구에 있던 사람을 가구원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전입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 (5) 출생아가 있을 때
 ㉓가구원 증가란의 ㉔란부터 ㉗란까지만을 기입하고 ㉘란 구분란에 “출생”이라 기입한다.
- (6) 사망자가 있을 때
 ㉙가구원 감소의 ㉚란부터 ㉝란까지만을 기입하고 ㉞란에 “사망”이라 기입하고 가구원번호에 사선을 긋는다.
- (7) 출생후 사망아가 있을 때
 지단달 변동사항 확인이전이나 이후에 출생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출생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 (8) 누락후 사망자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에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누락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 (9) 전입후 사망자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후에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전입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 (10)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자가 있을 때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

냈을 때에는 출생과 전입 두가지로 처리한다. (조사대상기간중의 출생일 경우에 한함)

(II)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가)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전입한 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 (조사대상기간중의 사망일 경우에 한함)

(나) 이때에는 비록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으나 전입가구원과 같은 요령으로 ⑩란부터 ⑳란까지 기입한다.

다. 가구명부

가구의 변동내용에 따라 가구표의 수정 및 보완, 변동보고서의 기입과 동시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가구감소의 경우

전출가구, 전출누락가구, 착오가구, 통합가구는 가구의 감소요인이 되며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① 증감여부

사선을 긋는다.

⑤ 변동일자

전출, 전출누락, 착오, 통합 년월일을 기입한다.

⑥ 변동구분

전출, 전출누락, 착오, 통합등으로 기입한다.

⑦ 보고년월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⑨ 비 고

동일조사구내로 진출한 경우 「○○○○-○○-○○번 가구로 이동」이라 기입한다.

2) 가구증가의 경우

전입가구, 전입누락가구, 착오가구, 분가는 가구의 증가요인이 되며 마지막 가구 다음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1)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① 가구번호

새로 작성한 가구표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④ 가구주 이름

가구주의 이름을 기입한다.

⑤ 변동일자

전입, 전입누락, 착오, 분가하여 전입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⑥ 변동구분

전입, 전입누락, 착오, 분가 등을 기입한다.

⑦ 보고년월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⑨ 비 고

동일조사구내에서 전입했을 경우 「○○-○○-○○○○번 가구에 서 이동」이라 기입한다.

3) 사람이 살지 않는 거처의 증감의 경우

(1) 사람이 살지 않는 거처가 철거(착오)되었을 때 다음의 해당란 에만 기입한다.

⑤ 변동일자

철거(착오)년월일을 기입한다.

⑥ 변동구분

각 경우에 따라 철거 혹은 착오라 기입한다.

(2) 사람이 살지않는 거처가 신축(누락)되었을 때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③ 가구번호

거처번호만 기입한다.

⑤ 변동일자

신축(누락)년월일을 기입한다.

⑥ 변동구분

신축 혹은 누락이라 기입한다.

4)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가 신축 철거되었을 때

거처의 신축, 철거의 사실을 변동일자와 변동구분에 기입하고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구내 이동 혹은 각 경우에 따라 가구의 증가 혹은 감소의 기입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라. 변동사항 종합표

매월 20일까지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해당란에 기입하고 가구표철 맨 위에 같이 철해 둔다. 다만, 20일 이전에 실사를 나갔을 때는 실사일까지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기재하고 익월에 누락일에 나타난 변동사항을 보완한다.

Ⅲ. 조사표 작성 및 면접요령

Ⅲ. 조사표 작성 및 면접요령

1. 조사표의 종류

인구동태조사표에는 1) 출생조사표, 2) 사망조사표, 3) 혼인조사표, 4) 이혼조사표가 있다.

2. 작성시기

매월 조사때 조사지역내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 작성한다.

3.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가구표와 조사표 및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를 휴대하고 조사에 임한다.
- (2)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수 및 가구원성명을 물어 가구표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인구동태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 (3) 조사표 기입요령을 충분히 익혀 조사에 임한다.
- (4)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응답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 (5) 조사표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의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질문시에는 조사표상의 항목순서대로 질문함으로써 질문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6) 규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사기일전이나 기일이

지난 후에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 (7) 조사대상기간(전월 21일~금월 20일)중에 표본구역내에 거주하던 가구가 금월 20일 이후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근가구에 물어 동태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8) 조사결과 알게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절대 비밀로 하여야 한다.
- (9) 조사표는 가구별로 작성하며 한 조사표에 해당 가구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동태사항을 기록한다. 이상의 동태건이 하나도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10) 1982년부터 조사대상기간이 전월 21일부터 금월 20일까지 1개월간이므로 전월에 발생된 동태건수를 누락시키기 쉬우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 (11) 표본연동교체에 의하여 그달에 새로 시작하는 구역은 과거의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세밀히 관찰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12) 출생과 사망에 대하여는 조사대상기간중에 대한 것만 묻지 말고 과거 1년간에 대해 조사하여 수시로 누락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13) 출생, 사망의 누락 혹은 보고내용이 조사원 자신에 의해 보완, 수정되었을 때에는 조사업무상 책임문제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누락, 조사상의 오류 등이 중앙직원에 의한 확인조사에 의해 밝혀질 때에는 조사원은 업무상 태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4. 면접 및 조사표 작성요령

가. 출생조사표

1) 출생의 정의

출생이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노출된 현상으로서, 모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태줄의 절단 또는 태반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호흡, 심장의 고동, 태줄의 진동, 수의근의 명료한 움직임 등 생존하고 있는 증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2) 조사기준

(1) 전입한 가구의 경우 출생이 전입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출생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2) 전출가구의 경우, 출생이 조사구내에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당해 출생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하였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가구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있었던 출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조사대상기간 말일(20일) 이전에 조사원이 실사를 나갔을 때는 다음달 조사시 누락기간만큼 꼭 보완할 것.

예 : 2, 3, 6, 8, 11월의 경우엔 20일 이전에 조사구를 방문할 것임. 만약 17일에 실사를 나갔다면 다음달에 18, 19, 20일에 해당하는 변동을 꼭 보완할 것. 18, 19, 20일에 발생된 출생이나 18, 19, 20일에 전입한 가구의 전입전 거주지에서의

출생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될 경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4) 출생후 입양된 아이는 생모의 상주가구에서 조사한다.
즉 생모가 같은 표본지역내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5) 주은 아기가 조사당시 당해조사구내에 살고 있는 경우는 그 유아의 출생지 및 어머니 (생모)의 상주지에 관계없이 동조사구내에서 조사한다.
- (6) 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현상주지에서 조사하고 유아 및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죽기전 상주지에서 조사한다. 이 경우에는 출생과 사망이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 (7) 조사당시 여행중에 있는 아기도 조사한다.

3) 조사요령

- (1) 가구를 방문했을 때 기저귀 및 금줄 (도시변두리지역 및 농촌지역) 등 어린애가 있는 흔적이 있는가 관찰하여 있을 경우 조사토록 한다.
- (2) 가구표에서 “출산예정년월” 란의 기재사항을 보고 예정일이 경과했거나 당월에 해당될 경우 출산유무를 확인한다.
- (3) 조사시점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상당기간 (1년이상) 애기가 없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 본다.
- (4) 가구표의 가구원상황을 보고 애기가 있는 경우라도 (1명 혹은 딸만 둘이나 셋일 때) 최종아이를 낳은지 1년이상 경과하였으

면 임신 및 출산여부를 확인한다.

- (5) 출산예정일이 임박한 부인(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것이므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달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가구표철 맨위에 철해 있는 “변동사항종합표”에 기록하여 확인토록 한다.
- (6) 산모가 부재중일 경우(친정 혹은 병원)에도 다른 가구원에게 물어 출산한 사실이 확실하면 조사토록 한다.
- (7) 낳자마자 사망한 애기나 낳은지 며칠후에 사망한 애기는, 그 가구에 애기가 있는 흔적이 전혀없고 또 응답자가 사실을 감춰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출산예정년월을 반드시 기록하고 또 최종아이 이후 경과년수, 조사시점과 초혼년월과의 간격 등을 참고하여 응답자를 유도 조사토록 한다.
- (8) 계속되는 여아출생이나 영아사망 등은 응답자가 사실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웃이나 통·반장을 통해 확인토록 한다.
- (9) 한가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음 가구나 인근가구에 가서 반드시 재확인(특히 출생, 사망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일단 출생진이 발견되면 다음 각항을 조사 기입한다.

① 본적 및 호주

출생아(출생아부친)의 본적 및 호주성명을 기입한다.

② 모의 이름

출생아의 친어머니 이름을 기입한다.

③ 모의 가구원번호

출생아 어머니의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④ 출생아 이름

출생아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만 기입하여 보고하되 가구표상에는 정식이름이 생겼을 때에 이름을 기입한다. (예 : 김 ○ ○)

⑤ 출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태어난 아기의 실제 출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⑥ 성 별

출생아의 남녀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 에 ○표 한다.

⑦ 출산당시 모의 연령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출산당시의 모의 나이

(예시 1) 출생아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보다 늦은 경우

※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출산당시모의나이)

1981.9.20 - 1952.5.4 = 29 세

(예시 2) 출생아의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보다 빠른 경우

출생아의 출생년도에서 모의 출생년도를 빼 나이에서 다시 1세를 빼야 모의 만나이가 된다.

※ (출생아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1 = 출산당시 모의 나이

$$1981.2.27 - 1948.9.11 - 1 = 32 \text{ 세}$$

(예시 3) 출생아와 모의 출생월이 같고 출생일자가 다른 경우 첫째,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예시 1)과 같이 환산하고

$$\ast (\text{출생아생년월일}) - (\text{모의 생년월일}) = \text{모의 나이}$$

$$1981.7.21 - 1952.7.15 = 29 \text{ 세}$$

둘째,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예시 2)와 같이 환산한다.

$$\ast (\text{출생아생년월일}) - (\text{모의 생년월일}) - 1 = \text{모의 나이}$$

$$1981.3.3 - 1952.3.18 - 1 = 28 \text{ 세}$$

⑧ 출산순위

신생아가 모의 몇번째 출산아 인가를 기입한다. 직접 모에게 “이 아이는 몇번째 아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 기입해야 한다. 이때, 출산순위는 낳았다 잃은 아이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⑨ 임신기간

신생아의 임신부터 분만까지의 월수를 기입해야 한다. 임신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이 아이를 몇개월만에 낳으셨습니까?」 등으로 묻고 만일 산모가 확실한 임신기간을 모를 경우는 「마지막 월경년월일」을 물어 다음 방식으로 달수를 계산한다.

$$(\text{출산년월일}) - (\text{모의 월경년월일}) = \text{개월 일}$$

⑩ 모의 교육정도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의 최종 출신 학교의 정도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재학중인 사람이나 중퇴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학년까지 기입한다.

- (예)
- | | |
|-------------|----------|
| 1. 무 학 | 2. 국민학교 |
| 3. 중 학교 | 4. 고등학교 |
| 5. 대학이상 | 6. 중2 중퇴 |
| 7. 구제중학 5년졸 | 8. 고1 재학 |

⑪ 조산자

신생아 분만에 임회하여 분만을 도운 사람을 말하며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한다. 의사 혹은 조산원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경우 기타에 해당한다. 자택에서 분만한 경우라도 의사가 조산했으면 1. 병원에 해당한다.

나. 사망조사표

1) 사망의 정의

사망이란 출생후 어느 시기에 있어서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영원히 소멸됨을 말한다. 즉 소생능력이 없는 출생후의 생존기능의 정지를 말하며 사산은 제외한다.

2) 조사기준

- (1) 전입가구의 경우 전입이전 거주지에서 사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조사되어야 한다.

(2) 전출가구의 경우, 사망이 그 조사구내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망과 가구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하지 않는다.

(3) 조사대상 말일(20일) 이전에 실사를 나갔을 때는 다음달 조사때 누락기간동안에 일어난 변동상황 즉 사망이나 전입한 가구의 전입전 거주지에서의 사망(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될 경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예: 만약 17일에 실사를 나갔다면 18, 19, 20일분을 다음달에 꼭 보완할 것)

3) 조사요령

(1) 사망은 자칫하면 누락하기 쉽고 응답기피도 많이 나타나므로 응답자를 적절히 유도하여 조사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가구표 기재상황을 보고 연로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하세요?” 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3) 전입가구에 대해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이 있었는가를 알기위해 할머니만 가구원으로 계실 경우 “할아버지는 안계세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등으로 질문하고 핵가족인 경우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으세요?” 로 질문하여 확인토록 한다.

(4) 사망발생이 별로없는 연소 및 젊은 연령층에 대한 사망을 알기 위해서는 가구원 개개인에 대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 (5) 가구원이 타지역(친척방문중, 여행중, 병원)에 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존 가구원중에서 계속해서 2개월이상 보이지 않을 경우 어디에 갔는가 반드시 확인한다.
- (6) 가계부 기입에서 담배(술, 치료용 의약품)지출이 계속 있다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것을 필요로 했던 가구원이 전출했는가 혹은 사망했는가를 자세히 관찰하여 확인토록 한다.
- (7) 불의의 사고(화재, 폭발, 연탄가스중독 등)로 인하여 가구원 전체가 사망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구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 현재도 계속 살고 있는지 반드시 옆가구에 확인하고 통·반장을 통하여 표본지역 전체에 대한 정보획득을 하도록 한다.
- (8) 영아사망, 악성병, 전염병 및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교통사고, 익사) 인한 사망 등은 응답자가 기억하기도 싫어하여 대부분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시지역 : 통·반장, 농촌지역 : 이장, 새마을지도자)을 통하여 사전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하도록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③ 사망자 이름

사망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애기”로 기입한다.

④ 가구원번호

사망자의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⑤ 성 별

사망자의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에 ○표한다.

⑥ 생년월일

사망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할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환산표에 의거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해야 한다.

⑦ 사망년월일

호적에 신고한 일자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사망한 일자를 양력으로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⑧ 사망자의 교육정도

사망자의 최종 출신학교의 정도에 따라 다음 예와같이 기입하며 재학중인 사람이나 중퇴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학년까지 기입한다.

- (예)
- | | |
|-------------|-----------|
| 1. 무 학 | 2. 국 민 교 |
| 3. 중 학 교 | 4. 고등학교 |
| 5. 대학이상 | 6. 중 2중퇴 |
| 7. 구체중학 5년졸 | 8. 고 1 재학 |

⑨ 직 업

사망자가 사망직전까지 종사하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사망자의 직업변동이 심할 때는 일생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입하며 14세 미만인 자는 「/」을 치고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으로 기입하되 부호는 ○○으로 기입한다.

(부록, 인구동태 직업부호 참조바람)

⑩ 혼인상태

사망당시 혼인상태를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기입한다.

⑪ 사망진단자

사망확인, 사망진단서의 작성, 검안서작성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하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 기타”에 ○으로 표시한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라도 의사가 사망확인을 했으면 1. 의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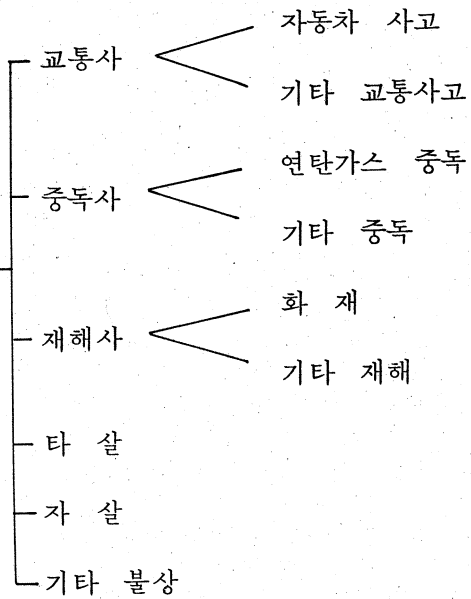
⑫ 사망원인

인구동태 사망원인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모르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기입한다.

사망의 분류

○ 병사

○ 외인사(外因死)



○ 기타 및 불상

1. 병사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외인없이 노쇠로 인한 사망은 병사임)

2. 외인사

병사가 아닌 외적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통사고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가) 자동차사고

충돌이나 비충돌에 관계없이 자동차(버스, 택시, 고속버스, 트럭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함.

예) 자동차와의 충돌, 기타 물체와의 충돌, 고속도로에서의 추락, 승강시의 비충돌성사고, 조종력상실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졸음, 섹맹 등) 등

나) 기타 교통사고

철도,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함.

예) 철도차량충돌, 탈선, 열차에서 추락, 선박침몰에 의한 사고, 높이가 다른 선박으로 이동할 때 부주의로 인한 추락, 이착륙시 동력 항공기사고, 우주선사고 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 자동차 스포츠 사고 → 재해사
- 산업시설 구역내에서 전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장비의 차량에

관련된 사고 → 재해사

-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사고 → 재해사
- 운행정지중인 운송장비 또는 차량의 유지 또는 수선중의 사고 → 기타 및 불상(不詳)

2) 중독사

각종 약물, 가스, 음식물중독에 의한 사망을 말하며 두가지로 분류한다.

가) 연탄가스 중독

나) 기타 중독

예) 부적합한 약물 또는 과오 및 부주의에 의한 약물투입 약품사용에서의 불의의 사고, 유독 동식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유독 가스(유황가스, 암모니아 가스등)에 의한 중독 등 단, 다음의 경우는 중독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투입된 올바른 약물이 부작용의 원인이 될 때
- 자살이나 타살을 의도로 또는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약물, 가스, 음식물을 투여했을 때

3) 재해사

각종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분류한다.

가) 화재

폭발,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나) 기타 재해

예) 폭설, 폭풍우 및 지각동요로 인한 사고, 계단 및 승강기에서의 추락, 불의의 익사, 불의의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건축 현장에서 추락 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유독성 동식물 및 곤충에 의한 중독 또는 독성작용에 의한 사고

4) 타 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타인에 의하여 상해 또는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진 상해(예: 손, 발, 주먹 등의 폭력, 총기 및 폭발물에 의한 가해, 약물, 약제중독에 의한 가해, 상해 또는 살해목적의 소아의 유기, 살해목적의 화상,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받은 상해 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후유증으로 사망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타살로 분류하지 않는다.

- 법적 개입에 의한 상해 - 경찰 또는 근무집행중인 자를 포함한 기타 법률집행자가 법률위반자를 체포 또 체포하려는 시도중 소란진압, 질서유지 및 기타 법률집행중에 입힌 상해 → 외인사중 기타 및 불상(不詳)
-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 전쟁 및 폭동기간중 발생한 군인 및 시민의 상해, 정전후 발생한 전쟁행위에 기인한 상해

5) 자살 및 자상

자살 및 자상의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의에 의한 사망

예)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자살 및 자의중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방법에 의한 자살 및 자상, 자살 또는 자상의 시도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후에 후유증으로 사망되는 경우

6) 외인사중 기타 및 불상(不詳)

상기 5종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외적인 요인으로 사망된 것이 사실이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

3. 기타 및 불상

병사 및 외인사도 아니며 사망원인이 전혀 불명인 경우

다. 혼인조사표

1) 혼인의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을 같이 살기로 하여 서로 공동의 생활로 들어가는 생활관계를 말하며 민법상의 혼인신고 또는 결혼예식을 올린 것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한다.

2) 조사기준

- (1) 상주개념에 의거 조사당시 그 조사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혼인은 모두 조사한다.
- (2) 천입한 가구(원)의 경우 혼인이 전입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혼인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 (3) 전출한 가구(원)의 경우 혼인이 조사구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해 혼인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했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 가구(원)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있었던 혼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4) 본 조사에서 혼인이라 함은 혼인식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혼(동거)도 포함하므로 사실혼에 대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5) 조사대상기간 말일(20일) 이전에 조사원이 조사구를 방문하였을 때는 다음달에 누락기간을 꼭 보완토록 할 것.

예) 2, 3, 6, 8, 11월의 경우는 20일 이전에 조사구를 방문할 것임. 만약 17일에 실사를 나갔으면 다음달에 18, 19, 20일에 해당하는 변동을 꼭 보완할 것. 18, 19, 20일에 발생된 혼인이나 18, 19, 20일에 전입한 가구의 전입전 거주지에서 혼인(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될 경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

- (6) 혼인조사표는 부부(한쌍)를 기준하여 1건으로 보아 1매를 작성한다.

- (7) 혼인하여 최초로 가정을 이루어 전입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혼인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 1984년 5월 18일에 결혼하였으나 전입은 5월 25일에 했을 경우 혼인과 전입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지만 혼인조사표는 작성하도록 한다.

- (8) 혼인만 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국내타지역) 남자를 기준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때에는 처의 가구원번호는 없을 것이므로 “특기사항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3) 조사요령

- (1) 가구가 새로 전입해 왔을 경우 이름 및 연령을 참고하여(본인 들은 남편이라고 얘기함) 부부인가 확인해 보고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인근가구에 가서 재확인토록 한다.
- (2) 혼인은 그 성질상 대부분이 전입가구(혼인과 동시전입)에 의한 것이므로 어린아이가 없는 부부만의 가구전입일 경우 혼인대상여 부를 확인토록 한다.
- (3) 결혼식만 올리고 따로 살고있는 경우(해외취업, 군입대, 타지방 근무)에도 혼인조사표를 작성하므로 젊은 여자(남자)가 혼자 살고 있을 때 결혼유무를 세심히 관찰한다.
- (4) 부부의 나이차이가 심할 경우 재혼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재혼일 경우도(한쪽 혹은 양쪽 모두) 혼인조사표를 작성하므로 본인들이 부인하면 인구가구에 가서 확인토록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부처 양쪽다 가구원번호를 기입토록 한다. 단, 혼인한 후에 부처 중 어느 한쪽이 조사구내에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 번호를 한쪽만 기입한다.

③ 이 름

부(夫)의 이름을 기입한다.

④ 가구원번호

부(夫)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⑤ 연 령

부(夫)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환산하여 기입한다. 환산방법은 ㉠출생에서 “출산당시 모의 연령”과 같다.

⑥ 교육정도

부(夫)의 교육정도를 기입한다.

⑦ 이 름

처(妻)의 이름을 기입한다.

⑧ 가구원번호

처(妻)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⑨ 연 령

처(妻)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환산방법은 ㉠출생에서 “출생 당시의 모의 연령”과 같다.

⑩ 교육정도

처(妻)의 교육정도를 기입한다.

⑪ 혼인년월일

실제 그 부부가 결혼한 날짜를 기입한다.

사실혼인 경우 동거시작년월일을 기입한다.

라. 이혼조사표

1) 이혼의 정의

부부 쌍방의 합의 또는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를 말하며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함께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현재 별거상태에 있을 경우도 이혼으로 간주한다.

2) 조사기준

(1) 전입한 가구(원)의 경우 이혼이 전입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이혼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2) 전출한 가구(원)의 경우 이혼이 조사구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해 이혼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했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가구(원)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있었던 이혼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조사대상기간 말일(20) 이전에 조사원이 조사구를 방문하였을 때는 다음달에 누락기간을 꼭 보완토록 할 것.

예) 2, 3, 6, 8, 11월의 경우는 20일 이전에 조사구를 방문할 것임. 만약 17일에 전입한 가구의 전입전 거주지에서의 이혼(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될 경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조사요령

(1) 이혼은 불유쾌한 사실이므로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하고 또 사실

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이나 통·반장을 통해 확인토록 한다.

(2) 혼인연령이 지난 단독가구원 또는 전입가구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③⑤ 부의 이름 및 처의 이름

부(夫) 및 처(妻)의 이름을 기입한다.

④⑥ 부의 연령 및 처의 연령

부(夫) 및 처(妻)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환산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환산방법은 ㉠출생에서 “출산당시 모의 연령”과 같다.

⑦ 생존자녀수는 그 부부가 이혼할 당시 동거했던 자녀를 말한다. 즉 재혼한 경우 전 남편(전처)소생을 두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은 생존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혼인년월은 가구표상의 초혼년월이 아니고 실제 이 부부가 결혼한 날짜를 말한다. (이 난은 해당부부의 실제 결혼기간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

Ⅳ.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Ⅳ.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1. 조사표류의 검토

가. 가구 표

- (1) 각 항목마다 기입상 누락 또는 오기가 없는가 확인한다.
- (2) 생년월일이 양력으로 환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3) 생년월일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만 15세 미만일 경우 재확인한다.
- (4) 모의 연령과 첫째 자녀와의 생년월일을 대조하여 연령차이가 만 15세 미만일 경우 재확인 한다.
- (5) 생년월일과 학력을 비교하여 맞게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중 2년제, 국 3년제 등과 같이 몇년제학 및 중퇴 등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6) 각 자녀들간의 터울은 적어도 1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7) 배우관계가 “미혼”이 아닐 경우 반드시 초혼년월이 기재되어야 한다.
- (8) 부처간의 나이차이가 심할 때는 재혼여부를 확인하고 재혼일 경우 부처의 초혼년월은 각기 달라야 한다.
- (9) 조사시점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보고 어린 아이가 없는 경우 임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2인이하) 마지막 자녀이후 1년이상 경과했을 때는 임신여부 및 출산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나. 변동보고서

- (1) 「③현황」에서 전월란의 숫자가 전월변동보고서상의 금월가구수 및 인구수와 일치하는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2) 「③현황」란의 기입이 맞게 되어 있는가 재확인 한다.
(전월+증가-감소 = 금월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씩 틀린 경우가 있음)
- (3) ①②③④⑤⑥⑦란의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 및 오기가 없는가 확인 한다.
- (4) 「①가구증가」 「②가구감소」 「③가구원증가」 「④가구원감소」란에서 실제 기입된 내용과 맨 윗상단에 합계된 숫자가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5) 「①가구증가」 및 「②가구감소」의 경우 가구표상의 가구번호와 변동보고서상의 가구번호가 일치하는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표상의 가구원수와 변동보고서상의 가구원수도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6) 「⑦임신기록 및 결과」란은 모든 임신부인과 임신이 끝난 부인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는바 꼭 확인하여야 한다.
(출생조사표가 제출되면 이 난은 꼭 기록되어야 함)

다. 조사표

- (1) ①②③④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 및 오기가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2) ①출생에서 ④모의 가구원번호가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가끔 출생아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하는 사례가 있음)

- (3) ㉔사망에서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바르게 기입되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4) ㉕혼인에서 부처 양쪽 다 반드시 가구원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단, 예외의 경우에는(부처가 같은 조사구에 살지 않을 때) 어느 한쪽만 기입해도 된다.
- (5) ㉖이혼에서 ㉗혼인년월은 두사람이 결혼한 날짜를 말함. 특히 재혼한 부부의 경우 가구표상의 초혼년월과는 구별되어야 함. (동일하게 기입되었는가 확인해야 한다.)
- (6) 생존자녀수는 두사람이 이혼할 당시 같이 살았던 자녀수를 기입해야 하므로 가구표와 대조하여 가구표상의 자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표류 제출

가. 제출상의 유의점

- (1) 인구동태표본조사표는 표지가 없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철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제출할 조사표류중에 빠진 것이 없는가를 재확인한다.
- (3)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표를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할 조사표류

- (1) 인구동태표본조사표 1부
- (2) 변동보고서(3부 작성하여 중앙에 1부)
- (3) 가 구 표(")

다. 제출일자

- (1) 조사원은 각 사무소에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 (2) 사무소장은 익월 5일까지 중앙에 도착하도록 제출한다.

부 록

인 구 등 태 직 업 부 호

01	전문직, 기술직 종사자 자연과학자 및 자연기술공 건축, 기사, 의사, 약사, 화가, 언론, 학자, 법무, 항해사, 기관사, 조종사, 제도사, 간호원, 성직자, 교직자, 조각, 체육인
0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관리자, 정부관리직, 입법종사자
03	사무직 및 사무관련직 종사자 제장, 경리, 속기, 교환, 우편집배원, 조사원, 승무원, 여객전무, 역장
04	판매종사자 판매관리자, 판매원, 점원, 행사, 복덕방, 전당포, 고물수집, 냉마주이, 증권거래, 보험외무원, 가두판매
05	서비스직 종사자 음식업, 숙박업, 영양사, 조리사, 가정부, 청소부, 미용사, 이용사, 세탁공, 소방원, 경찰관, 안내
06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수렵업 종사자 농업경영자, 과수원, 낙농, 벌목부, 어부, 농장종사자
07	생산 및 생산관련직 종사자 운수, 장비, 운전사, 노무자, 광부, 채석부, 굴정부, 방적공, 제재공, 금속가공, 화학제품제조공, 가죽처리공, 식품 및 음료제조공, 담배제조공, 양복공, 재봉사, 실내장식, 가구제조공, 대장공, 기계설치 및 조립공, 전기설비공, 용접공, 판금공, 유리 및 도자기공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공, 인쇄공, 도장공, 건설공사자, 노동자
00	14 세 미만인 경우(사망신고에 한함) 무직, 가사, 학생 군 인 미 상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가 구 표		① 조사구 번호	② 구역 번호	③ 거처 번호	④ 가구 번호	⑥ 거처 구분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비거주용건물 5. 주택이외의 거처	⑦ 소유 관계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싹월세 5. 월세 6. 기타	⑧ 구역 구분	1. 도시가계 2. 경제활동 3. 인구동태	매 중 매							
198	작성	⑤ 주소								⑨ 가구 구분	1. 봉급자 2. 노무자 3. 근로자의 4. 부적격								
⑩ 번호	⑪ 이 름	⑫ 가구주 관계	⑬ 성 별	⑭ 생 년 월 일			⑮ 학 력	⑯ 배 우 관 계	⑰ 초 혼		⑱ 출 산 계 획	⑲ 임 신 여 부		⑳ 전 입	㉑ 비 고	㉒ 가 계 조 사 부 적 격 사 유			
				년	월	일			년	월	남	여	년	월	년	월	일		
01				1	년	월	일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	년	월	일		
02				1	년	월	일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	년	월	일		
03				1	년	월	일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	년	월	일		㉓ 비고(거처 및 가구특징 등)
04				1	년	월	일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	년	월	일		
05				1	년	월	일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	년	월	일		
06				1	년	월	일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	년	월	일		
07				1	년	월	일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19	년	월	일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변 동 보 고 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5px; margin: 5px aut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5px; margin: 5px auto;"></div> <p style="text-align: center;">198 년 월분</p>	① 조사구 번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div>	② 가구표 정리 조사담당 지도구책임자 담 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div>	③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가구</td> <td>전 월</td> <td>증 가</td> <td>감 소</td> <td>금 월</td> <td></td> </tr> <tr> <td>인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가구	전 월	증 가	감 소	금 월		인구						④ 출생수 사망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div>
가구	전 월	증 가	감 소	금 월																		
인구																						

1 가구 증가 (⑤ 가구 ⑥ 명)							2 가구 감소 (⑭ 가구 ⑮ 명)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가 구 번 호	가 구 주 이 름	가 구 원 수	변 동 일 자	전 거 주 지	이 동 사 유	구 분	가 구 번 호	가 구 주 이 름	가 구 원 수	변 동 일 자	부 적 지	이 동 사 유	구 분	구 분	구 분
1	---		198	시도 구시군	1. 2.		1	---		198	시도 구시군	1. 2.			
2	---		198	시도 구시군	1. 2.		2	---		198	시도 구시군	1. 2.			
3	---		198	시도 구시군	1. 2.		3	---		198	시도 구시군	1. 2.			
4	---		198	시도 구시군	1. 2.		4	---		198	시도 구시군	1. 2.			
5	---		198	시도 구시군	1. 2.		5	---		198	시도 구시군	1. 2.			
6	---		198	시도 구시군	1. 2.		6	---		198	시도 구시군	1. 2.			
7	---		198	시도 구시군	1. 2.		7	---		198	시도 구시군	1. 2.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분 가 한 가 구 수			가 구	※ 1. ⑬ 구분란은 전입, 전입누락, 착오등을 기입 2. ⑤ 란에는 조사구내 분가한 가구수도 합제됨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통 합 된 가 구 수			가 구	※ 1. ㉒ 구분란에는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등을 기입 2. ⑭ 란에는 조사구내 통합된 가구수도 합제됨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3 가구원 증가(23 명)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성	년	월			일	학	리	초	혼	출					산	계	획	임	신	여	부
가	구	이	가	성	년	월	일	리	배	우	년	월	남	여	년	월	결	거	주	전	일	이	동	사	유	구
번호	번호	름	주	별	년	월	일	학	우	배	년	월	남	여	년	월	과	주	지	자	동	사	유	구	분	
1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2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3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4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5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6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7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8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9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10	- - -			1남 2여	19	년	월	일	1.2.3.4. 유사배우 3.이미 4.미	19	년	월			19	년	월	1.2.3.4. 출생사기 4.생	시	구	19	1.				

* 38 구분란은 출생, 전입, 누락등으로기입

4 가 구 원 감 소 (명)						
구분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이 름	변 동 일 자	목 적 지	이 동 사 유
1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2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3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4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5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6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7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8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9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10	---			198	시 도	1. 구 시 군 2.

5 가 구 표 수 정 요 구 사 항					
구분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가 구 표 란 번 호	수 정 전 내 용	수 정 후 내 용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④ 구분란은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등을 기입

변동 사항		조사구 번호		매 월별로 변동보고서의 ③란과 ④란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출장자 확인
		1월 중			1월 말재	2월 중			2월 말재	3월 중			3월 말재			
		증가	감소	출생	현	증가	감소	출생	현	증가	감소	출생	현			
가구 수																
변동가구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구 수																
		4월 중			4월 말재	5월 중			5월 말재	6월 중			6월 말재			
가구 수																
변동가구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구 수																
		7월 중			7월 말재	8월 중			8월 말재	9월 중			9월 말재			
가구 수																
변동가구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구 수																
		10월 중			10월 말재	11월 중			11월 말재	12월 중			12월 말재			
가구 수																
변동가구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구 수																